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㉑

2026년 4월 14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 기 획 예 산 처 장 관 박 홍 근

◉대통령령 제36261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 중 "100분의 30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투융자회사의 경우: 100분의 100
2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: 100분의 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9일 이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등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